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원5 채유미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기능을 정

비하는 한편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되, 서울시 출자액의 100분의 50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민간기록물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총 5개의 조항을 개정하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